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6월 2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노상욱)

가. 제안이유

- YDP생활문화센터가 도림동에 조성됨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를 통해 문화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2014.1.28.)되었음.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區) 생활문화 진흥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과 그 운영을 위한 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도 규정하여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 위법령을 근거로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음.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를 비롯한 5개의 자치구(강동, 관악, 금천, 노원, 마포)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제정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 먼저,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관련해서는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공간 제공, 전문 인력 지원, 네트워크 촉진, 활동 우수사례 발굴 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부패 유발 요인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 할 수 있음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6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이용료, 수강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함.
- 참고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區)는 舊 도림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개보수)하여 YDP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올 7월 중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임.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1	관 련 번 호
------------	-----	------------

제안연월일: 2025. 6. 13.

제 안 자: 박현우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안 제9조 제3항 생활문화진흥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중 개인 정보에 국한되기 보다 위원회가 심의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제3항의 내용을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로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9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에서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으로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을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으로 함.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략)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u>공개하되</u> ,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③ ----- ----- ---- <u>공개하되</u>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3.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

3.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 향유,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 단체,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 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① 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제13조제1항 관련)

1. 이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	비 고
마루공간(3층)	1회 3시간	30,000원	· 가산요율 -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당 기준 사용금액의 50% 가산
공유주방(2층)	1회 2시간	15,000원	
소모임실(1·2층)	1회 1시간	5,000원	
방음공간 (지하1층)	1회 1시간 (20㎡ 이하)	5,000원	
	1회 1시간 (20㎡ 이상)	10,000원	

- ①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의 50%
-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③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정기강좌	1개월	무료	· 기본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를 책 정할 수 있다.
특화강좌	1개월 미만	무료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수강료 감면 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 영등포구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사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30% 감면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수강료 반환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이용료 반환기준

환불 기준	내용	비 고
전액 반환	1)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영등포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90% 반환	이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1) 당일 이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취소 없이 미이용한 경우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환불 기준	내용	비 고
전액 반환	1)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경우 2) 센터 사정 및 프로그램 일정 변경으로 취소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수업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전까지	
미반환	1)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2) 취소 없이 미수강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531 호
----------	---------

제출연월일: 2025.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YDP생활문화센터가 도림동에 조성됨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장려를 통해 문화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라.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가능성 있음
 - 상기 검토 결과 반영하여 문구 변경(안 제9조제3항)
 - (변경 전)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 (변경 후)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 3) 인권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의견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5. 1.~5. 21./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3.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

3.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 향유,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 단체,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 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① 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제13조제1항 관련)

1. 이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	비 고
마루공간(3층)	1회 3시간	30,000원	· 가산요율 -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당 기준 사용금액의 50% 가산
공유주방(2층)	1회 2시간	15,000원	
소모임실(1·2층)	1회 1시간	5,000원	
방음공간 (지하1층)	1회 1시간 (20㎡ 이하)	5,000원	
	1회 1시간 (20㎡ 이상)	10,000원	

- ①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의 50%
-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③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정기강좌	1개월	무료	· 기본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 를 책정할 수 있다.
특화강좌	1개월 미만	무료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수강료 감면 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 영등포구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30% 감면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수강료 반환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이용료 반환기준

환불 기준	내용	비 고
전액 반환	1)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영등포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90% 반환	이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1) 당일 이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취소 없이 미이용한 경우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환불 기준	내용	비 고
전액 반환	1)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경우 2) 센터 사정 및 프로그램 일정 변경으로 취소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수업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전까지	
미반환	1)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2) 취소 없이 미수강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생활문화센터 신규 개관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2. 비용추계 기준 : 2025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서 준용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 2025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서 참고
 - (7~12월): 문화재단 정규직 직원 3명(89,439천원) / 전문계약직 직원 1명(21,350천원)
 - (1~12월): 문화재단 정규직 직원 3명(178,878천원) / 전문계약직 직원 1명(42,700천원)
- 생활문화센터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7~12월): 6개월분 70,837천원 / (1~12월): 141,674천원
- 생활문화센터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 (7~12월): 6개월분 148,100천원 / (1~12월): 296,200천원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7~12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소계(a)						
세출	○ 인건비	110,789	221,578	221,578	221,578	221,578	997,101
	○ 기본경비	70,837	141,674	141,674	141,674	141,674	637,533
	○ 사업비	148,100	296,200	296,200	296,200	296,200	1,332,900
	소계(b)	329,726	659,452	659,452	659,452	659,452	2,967,534
□ 총 비용(a-b)		-329,726	-659,452	-659,452	-659,452	-659,452	-2,967,534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 비							
시 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 간							
기 타		329,726	659,452	659,452	659,452	659,452	2,967,534
합계		329,726	659,452	659,452	659,452	659,452	2,967,534

6. 추가의견: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국 문화체육과 채승훈
연 락 처	02-2670-3178